

표준협약서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용)

연구개발사업명	세종과학펠로우십				
연구개발과제명	심부전 한의약 치료의 최적 Regimen과 Responder 예측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중개연구				
협약연구개발비	122,837 (단위:천원)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주관 연구책임자	임정태	
연구 개발비	(단위: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	122,837			122,837
	2차 연도	122,837			122,837
	3차 연도	122,837			122,837
	4차 연도	122,837			122,837
	5차 연도	122,837			122,837
	6차 연도				
	7차 연도				
	8차 연도				
	9차 연도				
	10차 연도				
	11차 연도				
	계	614,185			614,185
	총 연구개발 기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7년 02월 28일까지			
다년도 협약 기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5년 02월 28일까지				
당해연도 연구 기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02월 28일까지				
1단계	2022-03-01~2025-02-28		2단계	2025-03-01~2027-02-28	
3단계			4단계		

위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 기관과 주관 연구 기관 및 주관 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2022년 02월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업무대행)

주관연구개발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주관연구책임자 : 임정태

소 속 : 원광대학교

직급(위) : 연구교수

- 첨부서류
1. 협동과제목록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대행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전문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

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가) 제 1 차 :	2022년 03월 일	122,837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마) 제 5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6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7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8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9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10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11 차 :	년 월 일	천원
(마) 제 12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횟수, 시기, 지급 조건·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

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 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원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기술료의 징수·감면·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는 연구책임자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한 연구성과 정보 상의 기여도에 따른다.

제18조(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

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20조, 영 제42조·제43조와 법 제19조·제20조 또는 영 제42조·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제 확립 등) 연구지원체제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제52조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구노트 작성·관리)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의 연구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는 아래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일괄지급 :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영리기관(공기업)

2. 건별지급 : 기타비영리기관에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영리기관(공기업이 아닌 경우)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등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가 연구 종료(단계 종료) 예정인 경우, 종료 시점에 연구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또는 협약 종료 후 본 표준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연구과제 관련 주요사항 보고 및 관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리더연구, 중견연구, 우수신진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기초연구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의 참여 여부를 후속과제 선정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 중에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 및 처리규정 15조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학생연구원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각 연차의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제10조에 따라 연차별로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의 당해 연도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와 동일하나,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을 따른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성비위 및 갑질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가 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성비위 및 갑질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및 영 등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⑩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성과물에 미성년 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이 경우 전문기관에 조치결과 제출)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심의를 거쳐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

2022년 02월

전문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업무대행)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주관연구개발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 원광대학교

직급(위) : 연구교수

성명 : 임정태

첨 부 : 1.협동과제목록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첨부 1] 협동과제목록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시작	주관연구기관명
	정부	기업	기타	계	연구종료	연구책임자명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첨부 2] 연구비 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과제명 \ 지급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22.03)	(.)	(.)	(.)	(.)	(.)
심부전 한의약 치료의 최적 Regimen과 Responder 예측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중개연구	122,837					

과제명 \ 지급시기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	(.)	(.)	(.)	(.)	(.)
심부전 한의약 치료의 최적 Regimen과 Responder 예측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중개연구						